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식 외 금융상품에 대한 기관별 취득 제한 제도 신설〉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9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영대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6.
3. 회부연월일 : 2025.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음. 특히 경제부총리는 환율 방어와 외환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기에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내부정보 이용을 금지 하는 등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

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18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관별 취득 제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1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18(기관별 직무관련 금융상품 거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직중인 공공기관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직무관련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매수·인수하거나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유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의 금융상품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신

현행	개정안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21. (생략) <신설>	<u>탁제도(백지신탁 등)를 통하여 처분하여야 한다.</u> <u>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금융상품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22조(징계 등) ----- ----- ----- -----. 1. ~ 21. (현행과 같음) 22. <u>제14조의18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u>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주식, 부동산 및 가상자산에 대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등이 이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산 취득·보유 제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¹⁾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의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현행법상 기관별 자산 취득·보유 제한 제도>

구분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근거	법 제14조의15	법 제14조의16	법 제14조의17
대상	국가기관·지자체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국가기관·지자체
제한내용	소속 공무원의 관련 분야 주식 신규취득 제한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고지거부한 사람은 제외)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 *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고지거부한 사람은 제외)
예외사유	-	상속 등 불가피하게 부동산 취득시 기관장에게 신고	-

개정안은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해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관별 자산 취득·보유 제한 제도를 채권 등 금융상품 일반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직 중인 기관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직무 관련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신규 매수·인수,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유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탁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를 통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식 외에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의 수익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그 밖의 행정작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주식 외의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행위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²⁾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공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특정한 자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바, 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 법률에 요구되는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취득이나 보유가 제한되고 있는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의 경우 그 요건을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서 또는 직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2) 시장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을 금리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공직자가 취득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직무 관련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간접적 이해관계나 정보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을 기준으로 제한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금융상품 취득 제한 제도는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취득·보유 제한 제도에 비하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보이고 적용 요건도 추상적이어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둘째, 채권 등 금융상품의 경우 주식의 취득 제한과 달리 상속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것만을 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주식을 대상으로 설계된 현행법상의 백지신탁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개대상자등(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 주식(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의무 발생일(보유 주식의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기존 주식의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직무가 변경된 날,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 주식백지신탁

탁 계약 체결 이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조치사항(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직무회피(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후 동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여 금지) 등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식 외에 채권 등 금융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백지신탁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상속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것에 한하여 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이 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금융상품으로서 동질적 성격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주식과 달리 상속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자산만을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른 채권 등 금융상품 취득 제한 제도의 대상은 모든 공무원인 반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적용 대상은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바, 상속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채권 등 금융상품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공무원인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적용 대상인 공개대상자 등인지 명확하지 않음.

현행법상 백지신탁은 주식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해 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 요건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입법적 의도를 명확하게 하여 별도의 신탁제도를 도입하거나 준용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등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기관별로 운영되는 채권 등 금융상품의 취득 제한 제도와 관련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채권 등 금융상품의 취득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채권 등 금융상품의 취득 제한 제도는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의 취득·보유 제한 제도와 같이 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상품 취득 제한방안을 마련하여 기관별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제한방안 보고, 동 위원회의 개선 권고 등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부 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

주체가 각 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동 제도와 관련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능과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³⁾

개정안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직접 해당 자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금융상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점,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직무 관련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포괄적인 점, 개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재산공개대상자나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채권 등 그 밖의 금융상품도 백지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시행 중인 취득·보유 제한 제도는 각 기관에서 제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는 바, 동 제도와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현행법상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취득·보유 제한 제도와 관련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342